

보도시점 2026. 3. 15.(일) 12:00 (2026. 3. 16.(월) 조간)

## 건설업·별목업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납부는 3월 31일까지

- 토탈서비스로 신고하면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과 경품 이벤트 혜택
- 법정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와 가산금 부과될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별목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도 확정보험료와 202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험료 신고는 2025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6년도 보험료를 신고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 신고기한(3월 31일) 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주는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 내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수총액과 보험료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토탈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팩스가 없는 사업장은 휴대전화로 보험료 신고서를 사진 촬영해 문자로 전송(MO서비스) 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공식 모바일 앱 ‘TOUCH! 산재고용’에서 모바일 사진 보내기를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특히 법정 신고기한 내에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하면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첨을 통해 커피&베이글 기프티콘이 제공되는 이벤트에도 응모할 수 있다.

반면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확정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도 제한될 수 있어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단은 향후 보험료 신고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모바일 알림 서비스 ‘국민비서’를 통한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와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자신고 방식인 스마트DM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1588-0075)하거나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또는 유튜브 ‘근복이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2026년 보험료 신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1. 확정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한 사례  
 2. 보험료 신고방법 안내  
 3. 홍보시안

|       |                  |     |     |                    |
|-------|------------------|-----|-----|--------------------|
| 담당 부서 | 보험징수국<br>건설납부지원부 | 책임자 | 부 장 | 강승훈 (052-704-7260) |
|       |                  | 담당자 | 팀 장 | 전소현 (052-704-7250) |



## 붙임1

## 확정 보수총액을 잘못 산정한 사례

| 구분                          | 잘못 산정한 사례                                                                                                                                                                                                                                                            |
|-----------------------------|----------------------------------------------------------------------------------------------------------------------------------------------------------------------------------------------------------------------------------------------------------------------|
| 재료비 등 다른 계정으로 처리한 외주공사비·노무비 | 실제 외주공사 또는 노무비를 재료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등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여 보수총액에서 누락하고,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와 외주공사비의 29%('25년 하도급 노무비율)만 신고                                                                                                                                                           |
| 생산제품 설치특례 비해당 공사            |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적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외주공사비 등을 보수총액 산정 시 누락                                                                                                                                                                                                                      |
| 직업소개소 알선 현장인력               |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공급받은 현장인력(잡급)비용을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더라도 건설일괄 사업장(건설현장) 노무비(보수)에 포함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하여야함에도 누락                                                                                                                                                                    |
| 본사소속 현장근무자의 산재보험료           | 현장소장·기사 등 본사소속 현장 근무자 보수는 건설일괄 사업장(건설현장)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여야함에도 건설본사에 포함하여 잘못신고                                                                                                                                                                                       |
| 본사소속 현장근무자의 고용보험료           | 현장소장·기사 등 본사소속 현장 근무자 보수는 건설본사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여야함에도 건설일괄 사업장(건설현장)에 포함하여 잘못신고                                                                                                                                                                                       |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하도급공사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함에도 신고누락                                                                                                                                                                                                         |
| 하자보수공사 직영노무비                | 본공사종료 후 하자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수급인 직접 사용 근로자 보수(직영노무비)는 원수급인의 확보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야함에도 누락                                                                                                                                                                                 |
| 미분양 주택의 원가                  | 주택건설업체 중 미분양주택의 원가에 대해서 주택이 분양되는 연도로 원가를 이월하는 경우라도 실제 발생한 연도로 보수를 산입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에도 신고누락                                                                                                                                                                            |
| 공동도급공사                      | <p>①공동도급공사는 원가배분내역서의 노무비(보수) 및 외주공사비의 29%('25년 하도급노무비율)를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하나 대표사의 매일계산서 비용을 재료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고 보수총액 누락</p> <p>②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 각 사는 본부 파견직원에게 대해서도 각 사의 출자비율만큼 해당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각 사의 본사 보험료로 신고·납부하기로 협약한 후 출자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잘못 신고</p> |

**“2026년 3월31일은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마감일”**

대상: 건설업·벌목업 사업장 및 해외파견자, 고용보험자영업자 중 '12.121. 이전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로그인

**공지사항** 더보기 +

- 권역외상센터 시범수가 개정 관련 Q&A 알림 2026-03-12
- 산재보험 화상인증의료기관 시범수가 개정관련 Q&A 알림 2026-03-12
- '26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관련 Q&A 알림 2026-03-12
- '26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책자 2026-03-12
- 토탈서비스 정상화 알림 2026-03-09

**고객상담**  
(평일 09:00~18:00)

지사검색 →

서식자료실 →

실무자료실 →

업무상담 **1588-0075**

전산오류 **1833-6000**

| 보험료 신고 안내책자(e-book)        |                                                                                     | 보험료 신고 안내동영상(유튜브)                  |                                                                                       |
|----------------------------|-------------------------------------------------------------------------------------|------------------------------------|---------------------------------------------------------------------------------------|
| 2026년 고용·산재<br>보험료 신고 안내책자 |  | 근복이와 함께하는<br>쉽고 빠른 2026년<br>보험료 신고 |  |

| 휴대폰 문자로 보험료 신고(MO서비스) |                                                                                     | 공단 앱(TOUCH)을 통한 보험료 신고 |                                                                                       |
|-----------------------|-------------------------------------------------------------------------------------|------------------------|---------------------------------------------------------------------------------------|
| MO서비스<br>(문자보내기)      |  | 공단 공식앱<br>(TOUCH)      |  |



고용노동부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3월 31일까지**

**신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

2024 4월 1일  
더욱 **활**차게,  
우리답게!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보험료 납부까지 가능!

[total.comwel.or.kr](https://total.comwel.or.kr)

**전자신고 경품행사**

**기간**  
보험료 신고  
2026.2.1.[일] ~ 3.31.[화]

**경품**  
커피 & 베이글 기프티콘  
[1,200명]

**문의 사항**  
**☎ 1588-0075**